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(대외비)

2017. 1. 16.

1. 경과

▣ 운영위원회 개최

- 일시 : 2017. 1. 15. 일요일 20:00
- 장소 :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실
- 안건 :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문제
- 참석자(10인)
  - 이○○(18기, 연구회장), 김○○(29기, 연구회 간사)
  - 운영위원 : 김○○(22기),[1] 이○○(26기, 인사모 팀장),[2] 정○○(27기)[3]
  - 팀장 : 이○○(32기, 홍보),[4] 이○○(34기, 기획), 조○○(35기, 대외협력), 홍○○(35기, 학술), 이○○(27기, 편집위원장)
- 불참자(2인)
  - 운영위원 : 이○○(16기), 김○○(24기)

▣ 운영위원회 권한 (연구회칙 제7조)

- 총회 의결사항인 '회칙 개정, 회장 및 간사의 선출, 결산보고, 기타 필요한 사항'(제4조) 이외의 안건을 결정
- 의결 요건 : 과반수 출석, 출석 과반수 찬성

---

1) 신○○ 대법관 사태 때 주동적 입장
2) 강○○ 판결
3) 임관 성적에 비해 좋은 임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
4) 헌재 파견 1년 만에 복귀 명령 받음

제7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회는 주요 안건의 결정을 위하여 회장, 분과위원장, 편집위원장, 간사, 총무,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요구로 소집되며, 총회에서 위임한 사안, 기타 총회의 의결사항 이외의 안건을 결정하며, 의결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2. 주요 발언 내용

▣ 이○○

● 커뮤니티 명의를 사용한 외부행사 반대

- 연구회 회칙 제1조, 제8조에서 정한 "국제인권법 분야" 또는 "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"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함

제1조 (목적) 이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, 세미나,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, 그 연구 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8조 (활동)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.
1.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
2.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
3.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4.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, 세미나 등의 개최
5.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
6.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

- 공동세미나는 커뮤니티의 공식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

● 추가 논의 위한 운영위원회의 속행

- 인사 문제는 다수의 관심사이므로 커뮤니티 내 다른 회원 의사도 들어야 함

- 소모임에서 모든 내용을 결정한 후 의례적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님 (이○○, 동조)

● 공동세미나의 연기

- 꼭 개최하겠다면, 여러 가지 시국 상황이 정리된 9월에 가서야 고려해 볼 수 있음

▣ 나머지 운영위원들

● 법관인사 문제는 커뮤니티의 정당한 활동

- 법관인사는 사법권의 독립과 직결되고, 이는 기본권 보장의 필수조건이므로 커뮤니티 활동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

- 세미나 주제에 '인사'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함 (조○○)

- 그동안 소모임 활동에 운영위원회가 제동을 건 적이 없음

●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됨

- 1. 13. 금요일 운영위원회 개최사실을 공지하고 의견을 물어보았는바(아래 박스글), 3명의 회원이 법관인사 논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(이○○)

> 늦었지만 새해 인사 올립니다.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된 시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.
> 다름이 아니라, 2017. 1. 15. 20:00에 2017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회원 여러분과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.
> 우리 연구회는 그 동안 개별 소모임이 주관하는 정기세미나를 몇 차례 개최하였습니다.
> 그러한 가운데 인사모가 주관하는 정기세미나를 연세대학교와의 공동학술대회 형식하에 '법관인사제도'라는 주제로 3월에 개최하는 문제에 관하여 집행부 내에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.
> 그래서 연구회 회칙 제7조에 기하여 위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
> 운영위원회에서는 위 행사의 개최 여부, 주제의 적절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.
>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> 회원 여러분께서도 위의 문제에 관하여 이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다시거나 기획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의견을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운영위원회의에 풍요로운 밑거름이자 지렛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.

- *⇨ but, 양쪽 입장의 구체적 내용 및 논거를 밝히지 않은 공지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장은 부당함*

● 3월 혹은 6월에 개최하는 것이 옳음

- 공동세미나 개최는 인사 직후인 3월에 해야 함 (홍○○)

-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여 연기하더라도 6월 이후는 不可 (이○○)

▣ 기타

- 인사제도 논의가 커뮤니티 활동 범위에 속한다는 데에 이○○ 회장을 제외한 9명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였음
- 가장 강경한 입장 : 이○○ 판사
  - 이○○ 부장판사의 '절차 문제, 연기 고려' 등의 의견에 대해 "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다 정해졌는데 웬 딴소리" 등의 강경 발언을 하였음

3. 회의 결과

▣ 1. 20. 금요일 운영위원회 개최

- 이○○ 기획팀장이 1. 9. '연내 행사 주제 및 일정'에 관한 의견 공지를 하였는바, 그 기한이 1. 19.까지이므로 그 다음 날 운영위원회 개최
- 카톡방이나 인터넷으로 개최하여 다수결로 결정할 예정

▣ 주제 공모의 문제

- 위 공지 결과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다면 인사모 제안으로 다음 사항을 주제로 제시, 결정되게 하겠음 (이○○)
  - 1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
  - 2 법관인사 이원화의 방향
  - 3 법관의 전보 및 사무분담 문제

4. 향후 대책 (커뮤니티 명의로의 행사 고수 時)

가. 강경 案

▣ 대응 방안

- ① 커뮤니티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

◈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◈
제8조(활동)
② 연구회 간사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1년 동안의 활동성과, 회원현황, 결산현황,

및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, 소요예산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신임 회장 학술대회 불참 → 신임 회장 사임
  - 신임 회장 사임하면서 가능하면 고법부장 이상 회원도 함께 탈회
- ③ 예산 지원 감축(최소화) ⇨ 법원행정처의 결산 심사 및 관리 강독 강화

▣ 연구회의 설립허가 취소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

- 이 방안은 행정처와의 정면 대립을 낳는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

◈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◈ **제2조(연구회의 설립허가)**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**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.** ⇨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**◈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◈** **제10조(커뮤니티의 폐쇄)** ④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**제13조(운영위원회의 권한)**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, 커뮤니티의 폐쇄,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,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・의결한다.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,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나. 유화 내지 방임 案

▣ 「연구회 자체 학술행사」로 개최하는 안

- 커뮤니티 명의의 사용을 許하되,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전원의 공동 학술행사 개최 대신 3월 **「연구회 자체 학술행사」** 로 개최하는 방안
- 주제도 "각국의 법관인사제도 연구"와 같이 학술적으로 네이밍함
- 교수들은 발표자로만 참여시킴
- 이○○ 회장 제시

▣ 논거

- 현재 운영위원회는 인사모 구성원에 의한 과다 대표성을 갖고 있음
  - 운영위원 중 상당수가 인사모 소모임 구성원임
  - 운영위원회 결과가 “9 : 1”이라는 점은 민주토론절차상 있을 수 없는 결과임
  - 이들은 다른 일반 회원들과 달리 일방적,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음
- 3월에 개최하게 하는 것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행사가 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·외부의 반향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임
- 실제적으로 공동세미나에 참여할 수는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20~30명에 불과할 것임

5. 검토

▣ 강경 안의 문제점

- 대법원과의 대립으로 비춰질 가능성 ⇨ 제2의 ‘우리법연구회’처럼 그 지위가 격상될 가능성
-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, 각 정당에서 연구회 회칙 내용 및 예산의 공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, 이는 각 당의 보수·진보 성향에 따라 국회에서 문제될 수 있음
- 현재 35기 이하는 법관인사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바,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서 자칫 큰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음
- 이○○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것임

▣ 유화 안의 문제점

-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법관사회 전반에 공동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리려 할 것이고, 이는 곧 법관인사 논의의 주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고,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는 셈이 됨

- 향후 커뮤니티 명의로 사법행정의 모든 사항을 논하려 할 것임
- 차기 대법원장의 부담으로 직결됨

6. 결론

▣ **행정처 내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음 ⇨ 정책 결정 要**

▣ **이○○ 인사모 팀장의 행사 연기 제안**

- 1. 16. 이○○은 이○○ 회장에게 "6월 말 내지 7월 초에 개최하게 되면 이미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의 후임 윤곽이 드러날 터이므로, 그 때 개최하더라도 이○○ 회장과 現 대법원장의 관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"라면서 행사의 연기를 제안
- 이 역시 유화 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는 하나, 상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임 **[끝]**